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9호 2009. 12. 30.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92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19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194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조례 제2195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정선군조례 제2196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조례 제2197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정선군조례 제2198호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정선군조례 제2199호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6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
- 정선군규칙 제1162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30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71호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고시..... 33
- 정선군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
- 정선군고시 제2009-175호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고시..... 35
- 정선군고시 제2009-176호 정선군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42
- 정선군고시 제2009-177호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50
- 정선군고시 제2009-178호 2010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5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796호 2010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공고..... 53
- 정선군공고 제2009-812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공고..... 58
- 정선군공고 제2009-814호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독촉)고지서 송부 공시송달공고..... 59
- 정선군공고 제2009-825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60
- 정선군공고 제2009-826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62
- 정선군공고 제2009-828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4
- 정선군공고 제2009-829호 도로정비사업시행(변경)허가에 관한공고..... 66
- 정선군공고 제2009-83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7
- 정선군공고 제2009-833호 2010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모집공고..... 74
- 정선군공고 제2009-836호 「정선 아리랑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추가변경 공고..... 78
- 정선군공고 제2009-837호 2010년도 학교숲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82
- 정선군공고 제2009-839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8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2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의3(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를 “해당 이사”로 한다.

①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실·과·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운영

제21조제1항 중 “60일전”을 “40일전”으로 한다.

제26조 중 “1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복읍 소재 화장장 및 여량면에 조성중인 공설묘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단으로의 추가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함(안 제7조의2)
-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함(안 제8조)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의 실·과·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함(안 제9조)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함
(안 제12조)
-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운영”을 추가함
(안 제17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제정(2004. 06. 29 조례 제1943호)

개정(2008. 02. 18 조례 제20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제2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군수는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정선군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공단의 임·직원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선군의 실·과장이 된다.

제7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이사장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09.09.21)으로 지금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하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4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내 각급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 대하여 기숙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경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다음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5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 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 을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은 제외한다)” 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선군세감면 신청서”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조정되어 지방세 개별감면조례의 일몰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별도 시달된 행정안전부 「2010년도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감면대상의 삭제(안 제7조의2)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개정(안 제15조)
-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항 삭제
 -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제17조)
 -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4조)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안 제25조)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30조)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6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별표1 중 <증명> 제8호의 공장등록증명란, 제15호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임야 대장등본 기재분포함)란 및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기재분포함)	1필지 1개년	800원	
◦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	연도별 1주택당	800원	

별표1 중 <증명>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1호의 공유재산 대부신청란, 제2호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란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란, 제6호의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란, 제11호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1,000원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2호의 부속의료기관개설 허가란,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란,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란,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신고란 및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변경신고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3호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란 다음에 비료생산업 등록란 및 비료수입업 신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5,0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7호의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란 다음에 종합유원시설업란, 일반유원시설업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란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종합유원시설업			
- 허 가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허가 및 신고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건	30,000원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	1건	30,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향조정하며,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무권한의 이관사항 및 소관사무 개편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수수료 감면대상의 추가 신설(안 제7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안 별표 1)
 - 1) 농수산 분야
 -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 2) 관광문화 분야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보건사회분야에서 관광문화분야로 변경
 - “호텔업·콘도미니엄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수수료 삭제
 -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한 수수료 신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
 - 3) 건설도시 분야
 - 도로점용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점용료의 1/1,000 ⇒ 건당 1천원)
 - 4) 기타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정비
 - 수수료 인상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1개 항목
 - 수수료 폐지 : 지방세납세발급 수수료 등 3개 항목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7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의 갱신결정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각각 “대장가액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 2. 관리수탁자의 경영상태(공인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 4. 관리수탁자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 5. 기타 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2,000제곱미터” 를 “3,000제곱미터” 로, “(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를 “(다만,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한다)” 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제4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제3절의 제목 “(신탁)”을 “(신탁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간갱신) 영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의 관리능력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2. 기타 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상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신설(안 제4조제2항)
 - 기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었으나 영 제 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신설규정에 따라,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기준이 상향(5억원⇒10억원)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3항)
 - 취득·처분·용도폐지 및 용도변경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기준 완화 (대장가액 2천만원 ⇒ 5천만원)
 -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위 완화기준 범위이내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
 -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취득·처분 심의기준이 5천만원으로 '09.09.25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며(제196회 강원도의회 의결), 동일한 공유재산인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심의기준을 공유재산에 적용하여 재산관리 운영의 형평성 도모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삭제(안 제11조제1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 삭제
- 일반재산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 정리 (안 제21조)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
 - ※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탁하는 제도
 - ※ 위탁관리 : 일반재산의 개발관리를 위탁하는 제도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사항 등 신설(안 제 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의 신설에 따라, 병원·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
가 필요함
- 당초 최장 10년의 기간으로는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을 반영한 관
계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함

○ 생산·연구시설 대부료 등의 감면율 신설(안 제31조제3항)

- 2008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과제, 영 제17조제6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
항의 신설로 감면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본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연구시설 유치 기대(30퍼센
트 감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확대(안 제39조)

- 보존부적합 재산인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상 매각기준이 완화되어, 수의계약으
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개정
- 가. 일단의 토지면적 : 2,000제곱미터 이하 ⇒ 3,000제곱미터 이하
- 나.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읍·면지역은 1,000
제곱미터 이내로 상향
- 다. 다수의 사유건물의 수의매각기준과 범위를“5가구 이상 밀집지역”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간갱신을 위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사항 등 신설 (안
제40조의2)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을 2회 이상 갱신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8호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를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을 각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을 “ 「폐기물관리법」 ” 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을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을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을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를 각각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9조 중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 산막)” 을 “공공시설(야영장, 산막)”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선군민과 군민소유차량” 을 “정선군민” 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시설이용료 요금표(제9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이 용 료	
		비수기	성수기
산 막	26㎡(8평형)	30,000	60,000
	56㎡(17평형)	70,000	120,000
	79㎡(24평형)	80,000	170,000
	195㎡(59평형)	200,000	350,000
야 영 장	노지사용료	6,000	
	데크사용료	10,000	

※ 비수기 : 매년 4월 ~ 6월, 9월 ~ 11월

성수기 : 매년 1월 ~ 3월, 7월 ~ 8월, 12월

개 정 이 유

- 도사곡 산막 등 휴양지 시설물의 확충·정비에 따른 관리인력 및 관리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반영하여 효율적인 휴양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시설이용료 중 주차장요금 삭제(안 별표2)
- 야영장 및 도사곡산막 시설이용료 개정(안 별표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조례 제2199호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를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선소방서장

제7조제1항 중 “정리하는” 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정선소방서장 추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함(안 제7조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규칙 제116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64	264	11	86	27	84	9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33	213	6	52	20	64	78
4 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	1						
5급 소계	23	10	2	1	1	4	5
행정	6	5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간호	1			1				
6 급 소계	121	67	3	9	5	17	20	
행정	51	30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7	1				1	5	
행정.녹지	1	1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1			1				
농업.지도사	2			2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7 급 소계	141	73	1	18	7	18	24	
행정	48	26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5	3				2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4			2	2	4	
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8 급 소계	97	38	0	18	5	18	18	
행정	23	8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9 급 소계	47	22	0	5	2	7	11
행정	13	5				5	3
세무	3						3
사회복지	8	4				0	4
사서	1	1					
공업	3	1			2		
농업	4	2				1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1	1	0	0	0	0	0
연구사 소계	1	1	0	0			

학예연구.별정	1	1						
지도직 계	19	3	0	16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17	3	0	14				
농촌지도사	12	3	9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3			3				
생활지도사	2			2				
별정직 계	12	0	0	12	0	0	0	
6급상당 소계	11			11				
보건진료원	11			1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기관	1			1				
기능직 계	98	46	5	6	7	20	14	
6 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 급 소계	15	11	0	1	2	1	0	
토목	1	1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1	0				1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3	2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 급 소계	16	8	1	0	2	5	0	
토목	1	0			1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1	0		0		1		

영사	1	1						
운전	6	2	0	0		4	0	
필기	2	2						
전산	1	1						
조무	3	2	1					
9 급 소계	31	11	2	2	1	8	7	
토목	3	3						
전화상담	0	0						
통신	0	0						
전기	1				1			
기계	4					1	3	
운전	9	1	1	1		3	3	
필기	3	2	0	1				
워드	1		1					
전산	1	1						
조무	9	4		0	0	4	1	
10급 소계	32	13	2	3	1	6	7	
토목	1	1						
통신	0	0						
전화상담	1	1						
전기	1	1			0			
기계	1				0	0	1	
화공	0							
열관리	1	1						
운전	8	2		3		1	2	
위생	0	0						
워드	1	0	1					
전산	0	0						
필기	6	4			1	1		
조무	11	2	1	0		4	4	
통신.전기	1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4명(증2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7명(현행과 같음)
 - 읍 면 : 176명(△2명)
- 직렬별 정원 조정
 - 행정·사회복지·전산8급 증1명 ↔ 행정·사회복지8급 △1명
 - 공업·시설8급 증1명 ↔ 전산8급 △1명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2. 30.

정선군규칙 제1162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임시정류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 2. 건축물의 신·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수급 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⑤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측정하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제3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한다.
-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의시설 등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정 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 (안 제3조제1항제1호)
-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안 제3조제1항제2호)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2항)
- 흥행장, 공사장 및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등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소매인 지정(안 제3조제4항)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세부적 명시(안 제4조)

정선군고시 제2009-171호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0년도 당초예산이 제175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1.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01,688,378	286,122,590	15,565,788	5.44%
일반회계		268,708,529	251,096,603	17,611,926	7.01%
기타특별회계		24,671,869	25,301,953	△630,084	△2.49%
의료급여기금		562,444	541,805	20,639	3.81%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323,793	923,325	△599,532	△64.93%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41,987	58,781	△16,794	△28.57%
기반시설부담금		572,925	612,042	△39,117	△6.39%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00,000	600,000	0	0.00%
주택사업		110,196	230,000	△119,804	△52.09%
주차장		782,137	850,360	△68,223	△8.02%
수질개선		21,678,387	21,485,640	192,747	0.90%
상수도사업		8,307,980	9,724,034	△1,416,054	△14.56%

정선군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75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8.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53,219,675	349,160,042	4,059,633	1.16%
일반회계		307,713,195	304,756,422	2,956,773	0.97%
기타특별회계		35,952,379	35,269,892	682,487	1.94%
	의료급여기금	568,725	561,866	6,859	1.22%
	정선군임대아파트운영	931,796	931,796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62,087	58,781	3,306	5.62%
	기반시설부담금	555,274	580,959	△25,685	△4.4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00,488	600,000	488	0.08%
	주택사업	125,393	125,393	0	0.00%
	주차장	2,045,030	1,850,360	194,670	10.52%
	수질개선	31,063,586	30,560,737	502,849	1.65%
상수도사업(공기업)		9,554,101	9,133,728	420,373	4.60%

정선군고시 제2009-175호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2.
정 선 군 수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구간		소하천연장 (km)	지정(변경·폐지)사유
		시점	종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소하천 지정(실효)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9-155호)와 관련 정선군 소하천 지형도면작성을 완료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및 소하천을 재 지정하고자 함.
“세부내역 별첨”					

열람서류 : 소하천 위치도(축척 5,000분의 1 ~ 50,000분의 1 지형도)

I. 소하천지정 세부내역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총 계		177개 소하천		479.93	
한 강 (정선읍)	소 계	23개 소하천		70.74	
	생탄천	봉양6리 576	봉양6리 101	3.70	
	병방천	북실2리 280	북실2리 523	2.52	
	기우천	북실2리 121	북실2리 761	4.20	
	석교천	덕송1리 163	덕송1리 582	2.60	
	오반천	애산3리 17-1	애산1리 551	4.70	
	신치천	신월2리 494	신월2리 383-3	3.10	
	월석천	신월2리 56-1	신월2리 393-2	1.60	
	어치천	신월2리 143-1	신월2리 2	1.07	
	거어리천	덕우리 683	덕우리 526-2	2.50	
	여탄천	여탄리 1	여탄리 521	6.55	
	화작천	여탄리 121	여탄리 248	1.40	
	월평천	회동리 218-1	회동리 41	1.45	
	행마천	용탄리 1463-3	용탄3리 693-2	5.20	
	실론천	용탄1리 94	용탄1리 395	1.15	
	비룡동천	용탄2리 173-2	용탄2리 757-2	5.45	
	가는천	용탄2리 269	용탄2리 348	2.50	
	상평천	광하2리 1284	광하2리 52-1	5.90	
	소탄천	광하2리 1329	광하1리 954-1	3.10	
	여곡천	광하2리 1141	광하1리 779	2.40	
	망하천	광하2리 841-2	광하1리 536-3	2.00	
	의암천	굴암리 73	굴암리 169-1	4.30	
	만지천	굴암리 579	굴암리 73	1.65	
굴하천	굴암리 160	굴암리 93-1	1.70		
한 강 (고한읍)	소 계	8개 소하천		15.81	
	고토천	고한14리 248-1	고한14리 273	4.15	
	골말천	고한14리 산173	고한14리 273	0.90	
	정암천	고한1리 산214-36	고한5리 274-4	3.39	
	두문천	고한2리 326	고한5리 274-4	4.40	
	목골천	고한15리 산213-1	고한15리 산216-14	0.45	
	골안천	고한2리 산2-1	고한2리 산177-2	0.53	
	소두문천	고한3리 272	고한2리 산177-28	1.35	
	당목천	고한9리 산2-1	고한9리 산260-3	0.64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한 강 (사북읍)	소 계	8개 소하천		21.58	
	노른천	사북1리 104-3	사북1리 211	2.75	
	북일천	사북1리 18	사북1리 306-6	5.90	
	호직천	직전리 1	호촌리180-4	4.75	
	피네골천	직전리	직전리	0.60	
	도직천	직전리 290-6	사북4리 산282-1	4.58	
	배래치천	직전리 610	직전리 547-1	1.00	
	서부랑천	직전리 456	직전리 376	1.50	
	햇골천	사북12리 342-1	사북12리 452	0.50	
한 강 (신동읍)	소 계	27개 소하천		75.80	
	매화천	방제1리 350-4	방제1리 452	6.60	
	속괭이천	방제1리 산20	방제1리 236-1	1.70	
	둔박골천	방제1리 306-2	방제1리 257	1.60	
	미륵천	방제1리 산87-144	방제1리 214-1	2.50	
	단곡천	방제2리 산87-144	방제2리 1-8	3.60	
	새비재천	방제4리 443-71	방제4리 산87-146	1.50	
	방제천	방제4리 434-17	방제1리 산87-106	2.38	
	구룡동천	방제4리 산56-1	방제4리 282-15	0.90	
	세골천	조동8리 115	방제1리 산4-1	2.56	
	활터천	조동7리 산16-7	조동7리 223-1	0.80	
	길운천	예미3리 산77	조동13리 268	3.10	
	절골천	조동1리 산70-12	조동1리 산63-18	2.28	
	내곡천	천포리 산31	천포리 498	1.35	
	곡길천	천포리 산45	천포리 498-2	2.40	
	두리골천	가사리 산70	가사리 360-4	4.00	
	마차재천	가사리 134	가사리 223	2.40	
	원가사천	가사리 산14	가사리 396-11	2.10	
	의림천	가사리 산11	가사리 698	6.50	
	유문동천	예미2리 산36	예미1리 392-35	3.10	
	원덕천	덕천리 224	덕천리 314	3.00	
	고성천	고성1리 1030	덕천리 97-2	6.90	
	병산천	고성2리 산283	고성2리 697-3	0.80	
	신진천	고성2리 278	고성2리 401	0.93	
고림천	고성1리 90	고성1리 136	1.20		
미구천	고성1리 569	고성1리 455	1.20		
설운천	운치13리 399	운치3리 1131	4.00		
기곡천	운치1리 490	운치1리 1130	6.40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한 강 (화암면)	소 계	30개 소하천		69.32	
	구슬동천	건천리 571-18	건천리 346-3	4.40	
	화표동천	화암리 111-4	화암리 329-2	2.85	
	절골천	화암리 2-2	화암리 15	1.65	
	제동천	물운리 731	물운리 258-1	3.15	
	좌사천	화암리 583	화암리 827-2	1.80	
	수류골천	석곡리 산433	석곡리 211-1	2.50	
	베지름천	석곡리 420	석곡리 산359	0.88	
	덕산기천	북동리 563	덕우리 305	13.65	
	재미골천	북동리 산1	북동리 388	1.90	
	석곡천	북동리 557	북동리 561	0.50	
	월애천	북동리 326	북동리 403	7.25	
	후곡천	북동리 215	북동리 261-1	0.50	
	무널천	북동리 88	북동리 54	0.90	
	하들목천	석곡2리 1270	석곡2리 산146-1	0.60	
	보리산천	석곡2리 1125	석곡2리 1187-1	1.00	
	속섬천	석곡2리 850	석곡2리 827-7	0.50	
	후평천	화암3리 320	화암3리 285	0.50	
	양지말천	화암3리 726	화암3리 794-3	0.50	
	심우골천	화암3리 654	화암3리 1306	1.00	
	오산천	화암3리 1029	화암3리 903-1	0.95	
	건천천	건천리 5	물운리 208	7.00	
	송이골천	건천리 152	건천리 198-5	0.80	
	소일천	건천리 280	건천리 408	1.50	
	서원기천	백전리 597	백전리 산235	2.39	
	늪동천	백전1리 381	백전1리 383-1	0.55	
	노목천	백전리 246	백전리 308-2	2.50	
	마당목천	백전리 85	백전리 170	3.40	
공기재천	백전2리 157	백전2리 150-2	0.60		
장항천	백전2리 44-2	백전2리 85	2.60		
느서목골천	백전2리 19	백전2리 6-2	1.00		
한 강 (남 면)	소 계	25개 하천		52.98	
	척산천	무릉3리 696	무릉4리 423-5	2.13	
	금곡기천	무릉2리 27	무릉2리 788-1	6.12	
	쇠골천	무릉2리 70	무릉2리 120-5	0.50	
	싸리재천	무릉2리 13	무릉2리 293-1	1.30	
	덕만천	무릉2리 320	무릉2리 819-8	1.14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한 강 (남 면)	자고치천	무릉2리 357	무릉2리 362	0.65	
	자미원천	문곡3리 산130	문곡3리 137-2	4.38	
	웃자미원천	문곡3리 산135	문곡3리 산130	0.60	
	마차천	문곡2리 557-4	문곡2리 590	6.56	
	곰골천	문곡2리 산243	문곡2리 507-3	1.20	
	상시골천	문곡2리 산228	문곡2리 454	1.00	
	점촌천	문곡2리 388	문곡2리 592	1.00	
	소마평천	문곡3리 산356	문곡3리 산374-4	1.10	
	거칠현천	낙동1리 8	낙동1리 28-3	1.80	
	서운재천	낙동1리 61	낙동1리 60-3	1.00	
	이용골천	낙동1리 248	낙동1리 336-6	1.00	
	삼내천	유평2리 199	유평1리 434-3	2.20	
	고병골천	유평2리 81	유평2리 382-2	3.40	
	남창천	낙동1리 285	낙동1리 386-6	1.10	
	갠들천	낙동2리 산49-1	낙동2리 410-3	0.90	
	채운천	광덕1리 232	광덕1리 483-1	5.60	
	뒷내천	낙동2리 산295	낙동2리 580-1	1.00	
	송오리천	광덕2리 776	광덕2리 1183-13	1.00	
	갈금천	광덕2리 산323	광덕2리 1182	2.00	
	광탄천	광덕2리 산323	광덕2리 50-1	4.30	
한 강 (여량면)	소 계	11개 소하천		33.59	
	자개천	구절1리 산32	구절1리 378-2	2.60	
	중동천	구절3리 산1	구절3리 146	0.85	
	사자목천	구절2리 72	구절1리 288-1	4.10	
	고비덕천	구절1리 산224	구절1리 290-4	0.64	
	되골천	유천2리 산7	유천2리 261	2.00	
	남곡천	남곡리 158-2	남곡리 106	6.75	
	적목천	봉정리 282	봉정리 349-4	2.25	
	고양천	고양리 230-11	여량1리 673-4	6.15	
	고창골천	고양리 59	고양리 229	3.50	
	큰골천	고양리 102	고양리 226-2	3.20	
	스므골천	고양리 489-2	고양리 504	1.55	
	한 강 (북평면)	소 계	17개 소하천		53.21
하남천		장열2리 산55-1	장열2리 598-6	0.73	
한골천		북평5리 산1	북평5리 34-1	9.25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한 강 (북평면)	장열천	장열1리 산97	장열1리 283-3	1.19	
	한대골천	남평리 산106	남평리 587-3	1.75	
	북적골천	남평리 105-1	남평리 607-9	2.04	
	새미골천	남평리 553-1	남평리 1184-7	2.47	
	용소천	북평5리 산1	북평5리 398-5	1.00	
	아창천	북평5리 산168	북평5리 307-1	1.00	
	백운천	문곡리 203	문곡리 305	2.55	
	스므골천	문곡리 149	문곡리 253	1.85	
	벗밭천	숙암리 산1	숙암리 439	3.55	
	오재미천	숙암리 산400	숙암리 497	0.55	
	단임천	숙암리 289	숙암리 산1	6.33	
	우동골천	숙암리 산62	숙암리 271	1.00	
	장재천	숙암리 204	숙암리 289	2.50	
	안단임천	숙암리 산1	숙암리 289	3.30	
어도원천	나전1리 산99	나전1리 429-3	2.15		
한 강 (임계면)	소 계	28개 소하천		96.90	
	가목천	가목리 73	임계1리 산8-22	5.00	
	직원천	직원2리 산1-1	직원2리 404	4.20	
	명주목천	직원2리 6	직원1리 71-1	3.20	
	도전천	임계2리 58	도전1리 산1-1	6.40	
	금방동천	임계3리 산8	임계2리 814	7.30	
	큰골천	임계4리 산604	임계3리 366-3	8.20	
	용구장천	봉산1리 579	송계8리 571	1.70	
	장찬골천	송계5리 산166-1	봉산2리 310-1	5.40	
	뒷골천	낙천1리 산63	낙천1리 126-2	2.50	
	소두천	낙천2리 660	낙천2리 산153-1	2.90	
	오곡천	낙천1리 산17	낙천3리 산17	1.60	
	월탄천	용산1리 산18	용산1리 202-2	1.10	
	햇골천	용산2리 산1	용산2리 산204-2	2.20	
	석산천	용산2리 산140	용산2리 산174-2	1.20	
	용동천	용산2리 산276	용산2리 531-5	0.90	
	석둔천	골지1리 산180	골지1리 산176-1	1.00	
	월루천	반천2리 산8	반천1리 산77-1	1.50	
슬안천	송계2리 39	봉산3리 산169-1	5.80		

수 계 명 (행정구역)	소하천명	소 하 천 구 간		소하천연장 (k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한 강 (임계면)	큰너근령천	송계1리 산186-6	송계2리 919-5	1.60	
	너근령천	송계2리 산150-1	송계2리 881-2	1.60	
	고양천	고양리 산171	반천1리 601-1	11.50	
	소래천	덕암리 산52	덕암리 137	2.90	
	등골천	덕암리 산50-1	덕암리 118	2.20	
	무널골천	덕암리 산50-1	덕암리 237	2.80	
	삼배일천	덕암리 289	덕암리 249	1.70	
	장강천	덕암리 293	덕암리 339-2	2.70	
	위밀천	덕암리 357-2	덕암리 374-2	1.10	
	덕암천	덕암리 394	덕암리 3	6.70	

정선군고시 제2009-176호

정선군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 1.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소하천, 예정지구
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9. 12. 22.

정 선 군 수

가. 고시이유 : 기존의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
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일원

다. 지형도면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편입토지 세부조서 : 게재생략(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비치)

마. 소하천구역 고시도면 : 게재생략(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비치)

I. 정선군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조서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총 계			177개 소하천		479.93	11,646,206	
정선읍	소 계		23개 소하천		70.74	1,273,354	
	생탄천	11-12-001	봉양6리 576	봉양6리 101	3.70	51,867	
	병방천	11-12-002	북실2리 280	북실2리 523	2.52	38,025	
	기우천	11-12-003	북실2리 110	북실2리 761	4.20	61,095	
	석교천	11-12-004	덕송1리 163	덕송1리 582	2.60	34,988	
	오반천	11-12-005	애산3리 17-1	애산1리 551	4.70	75,165	
	신치천	11-12-006	신월2리 501	신월2리 383-3	3.10	52,106	
	월석천	11-12-007	신월2리 56-1	신월2리 393-2	1.60	29,912	
	어치천	11-12-008	신월2리 143-1	신월2리 2	1.07	14,466	
	거어리천	11-12-009	덕우리 683	덕우리 526-2	2.50	46,892	
	여탄천	11-12-010	여탄리 1	여탄리 521	6.55	148,560	
	화작천	11-12-011	여탄리 121	여탄리 248	1.40	21,240	
	월평천	11-12-012	회동리 218-1	회동리 41	1.45	14,668	
	행마천	11-12-013	용탄리 1463-3	용탄3리 693-2	5.20	98,788	
	실론천	11-12-014	용탄1리 173-2	용탄1리 757-2	1.15	16,600	
	비룡동천	11-12-015	용탄2리 74-2	용탄2리 395	5.45	108,507	
	가는천	11-12-016	용탄2리 269	용탄2리 348	2.50	37,752	
	상평천	11-12-017	광하2리 1284	광하2리 52-1	5.90	140,471	
	소탄천	11-12-018	광하2리 1329	광하1리 954-1	3.10	65,914	
	여곡천	11-12-019	광하2리 1141	광하1리 779	2.40	36,760	
	망하천	11-12-020	광하2리 841-2	광하1리 536-3	2.00	24,969	
	의암천	11-12-021	굴암리 73	굴암리 169-1	4.30	106,891	
	만지천	11-12-022	굴암리 579	굴암리 73	1.65	20,838	
굴하천	11-12-023	굴암리 160	굴암리 93-1	1.70	26,880		
고한읍	소 계		8개 소하천		15.81	228,222	
	고토천	11-12-025	고한14리248-1	고한14리273	4.15	67,921	
	굴말천	11-12-026	고한14리산173	고한14리237	0.90	9,001	
	정암천	11-12-027	고한1리산 214-36	고한5리213-22	3.39	53,419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고한읍	두문천	11-12-028	고한2리326	고한5리274-97	4.40	61,783	
	목골천	11-12-029	고한15리산213-21	고한15리산216-14	0.45	4,825	
	골안천	11-12-030	고한2리산334-63	고한2리산177-2	0.53	3,971	
	소두문천	11-12-031	고한3리272	고한2리산177-28	1.35	21,500	
	당목천	11-12-034	고한9리산2-1	고한9리산260-3	0.64	5,802	
소 계		8개 소하천			21.58	1,501,576	
사북읍	노른천	11-12-024	사북1리 104-3	사북1리 211	2.75	36,303	
	북일천	11-12-033	사북1리 18	사북1리 306-6	5.90	110,183	
	호직천	11-12-036	직전리 1	화암면 호촌리 180-4	4.75	76,766	
	피네골천	11-12-037	직전리 255	직전리 산73-3	0.60	9,730	
	도직천	11-12-038	직전리290-6	사북4리산282-1	4.58	95,771	
	배래치천	11-12-039	직전리610	직전리547-1	1.00	6,737	
	서부랑천	11-12-040	직전리456	직전리376	1.50	18,996	
	햇골천	11-12-042	사북12리342-1	사북12리452-14	0.50	4,537	
소 계		27개 소하천			75.80	1,140,608	
신동읍	매화천	11-12-043	방제1리350-4	방제1리406-3	6.60	103,312	
	속갱이천	11-12-044	방제1리산20	방제1리236-1	1.70	16,745	
	둔박골천	11-12-045	방제1리306-2	방제1리257	1.60	20,559	
	미륵천	11-12-046	방제1리산87-144	방제1리214-1	2.50	41,029	
	단곡천	11-12-047	방제2리산87-144	방제2리1-8	3.60	71,249	
	새비재천	11-12-048	방제4리443-71	방제4리산87-146	1.50	19,264	
	방제천	11-12-049	방제4리434-17	방제1리산87-182	2.38	31,675	
	구룡동천	11-12-050	방제4리산56-1	방제4리282-15	0.90	6,872	
	세골천	11-12-051	조동8리128	방제1리산4-3	2.56	20,155	
	활터천	11-12-052	조동7리산16-7	조동7리223-1	0.80	4,140	
	길운천	11-12-053	예미3리산77	조동13리268	3.10	66,478	
	절골천	11-12-056	조동1리산70-12	조동1리산63-18	2.28	27,242	
	내곡천	11-12-058	천포리산31	천포리498	1.35	18,896	
	곡길천	11-12-059	천포리산45	천포리498-2	2.40	24,350	
두리골천	11-12-060	가사리산70	가사리360-4	4.00	73,752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신동읍	마차재천	11-12-061	가사리134	가사리223	2.40	22,132	
	원가사천	11-12-062	가사리산14	가사리396-11	2.10	19,027	
	의림천	11-12-063	가사리산11	가사리698	6.50	140,530	
	유문동천	11-12-065	예미2리산36	예미1리892-35	3.10	28,461	
	원덕천	11-12-066	덕천리224	덕천리314	3.00	42,834	
	고성천	11-12-067	고성1리1030	덕천리97-2	6.90	128,887	
	병산천	11-12-068	고성2리산283	고성2리697-3	0.80	5,782	
	신진천	11-12-069	고성2리278	고성2리401	0.93	8,121	
	고림천	11-12-070	고성1리90	고성1리136	1.20	13,298	
	미구천	11-12-071	고성1리569	고성1리455	1.20	13,614	
	설운천	11-12-072	운치13리399	운치3리1131	4.00	62,583	
	기곡천	11-12-073	운치1리490	운치1리1130	6.40	109,621	
	소 계		30개 소하천		69.32	1,483,615	
화암면	구슬동천	11-12-054	화암리 571-18	화암리 346-3	4.40	81,281	
	화표동천	11-12-055	화암리 111-4	화암리 329-2	2.85	94,474	
	절골천	11-12-057	화암리 2-2	화암리 15	1.65	21,466	
	제동천	11-12-064	물우리 731	물우리 258-1	3.15	66,066	
	좌사천	11-12-074	화암리 583	화암리 827-2	1.80	10,962	
	수류골천	11-12-075	석곡리 산409	석곡리 211-14	2.50	58,609	
	베지름천	11-12-076	석곡리 산420	석곡리 산359	0.88	14,650	
	덕산기천	11-12-077	북동리 563	덕우리 305	13.65	426,780	
	재미골천	11-12-078	북동리 350	북동리 388	1.90	35,963	
	석곡천	11-12-079	북동리 557	북동리 561	0.50	4,286	
	월애천	11-12-080	북동리 326	북동리 403	7.25	166,998	
	후곡천	11-12-081	북동리 215	북동리 261-1	0.50	8,913	
	무넬천	11-12-082	북동리 44	북동리 54	0.90	12,323	
	하들목천	11-12-083	석곡 2리 1270	석곡 2리 산146-1	0.60	26,847	
	보리산천	11-12-084	석곡 2리 1125	석곡 2리 1187-1	1.00	12,199	
속섬천	11-12-085	석곡 2리 850	석곡2리 827-7	0.50	7,434		
후평천	11-12-086	화암 3리 320	화암 3리 285	0.50	5,497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화암면	양지말천	11-12-087	화암 3리 726	화암 3리 794-3	0.50	8,560	
	심우골천	11-12-088	화암 3리 654	화암 3리 755-1	1.00	12,742	
	오산천	11-12-089	화암 3리 1029	화암 3리 903-1	0.95	6,450	
	건천천	11-12-090	건천리 5	물운리 208	7.00	145,340	
	송이골천	11-12-091	건천리 152	건천리 198-5	0.80	13,551	
	소일천	11-12-092	건천리 280	건천리 408	1.50	24,173	
	서원기천	11-12-093	백전리 597	백전리 산235	2.39	35,515	
	늪동천	11-12-094	백전 1리 381	백전 1리 383-1	0.55	9,754	
	노목천	11-12-095	백전리 246	백전리 308-2	2.50	49,620	
	마당목천	11-12-096	백전리 85	백전리 170	3.40	57,032	
	공기재천	11-12-097	백전 2리 157	백전 2리 150-2	0.60	10,566	
	장항천	11-12-098	백전 2리 산495	백전 2리 85	2.60	38,494	
	느서목골천	11-12-099	백전 2리 19	백전 2리 6-2	1.00	17,070	
소 계		25개 소하천			52.98	2,624,223	
남 면	척산천	11-12-100	무릉 3리 696	무릉 4리 423-5	2.13	44,796	
	금곡기천	11-12-101	무릉 2리 27	무릉 2리 788-1	6.12	155,806	
	쇠골천	11-12-102	무릉 2리 70	무릉 2리 120-5	0.50	6,996	
	싸리재천	11-12-103	무릉 2리 13	무릉 2리 293-1	1.30	12,908	
	덕만천	11-12-104	무릉 2리 320	무릉 2리 819-8	1.14	14,225	
	자고치천	11-12-105	무릉 2리 357	무릉 2리 362	0.65	9,243	
	자미원천	11-12-106	문곡 3리 산130	문곡 3리 137-1	4.38	108,103	
	웃자미원천	11-12-107	문곡 3리 산135	문곡 3리 산130	0.60	8,716	
	마차천	11-12-108	문곡 2리 557-4	문곡 2리 590	6.56	152,630	
	곰골천	11-12-109	문곡 2리 산243	문곡 2리 507-3	1.20	11,722	
	상시골천	11-12-110	문곡 2리 산228	문곡 2리 454	1.00	12,819	
	점촌천	11-12-111	문곡 2리 388	문곡 2리 592-33	1.00	13,389	
	소마평천	11-12-112	유평리 산356	유평리 산374-4	1.10	17,734	
	거칠현천	11-12-113	낙동 1리 8	낙동 1리 28-3	1.80	41,315	
	서운재천	11-12-114	낙동 1리 61	낙동 1리 60-3	1.00	11,188	
이용골천	11-12-115	낙동 1리 248	낙동 1리 336-6	1.00	12,926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남 면	삼내천	11-12-116	유평 2리 199	유평 1리 434-3	2.20	44,651	
	고병골천	11-12-117	유평리 81	유평리 629	3.40	55,692	
	남창천	11-12-118	낙동 1리 285	낙동 1리 386-6	1.10	25,517	
	갸들천	11-12-119	낙동 2리 산49-1	낙동 2리 410-3	0.90	16,629	
	채운천	11-12-120	광덕 1리 232	광덕 1리 483-1	5.60	103,077	
	뒗내천	11-12-121	낙동 2리 산295	낙동 2리 580-1	1.00	9,078	
	송오리천	11-12-122	광덕 2리 776	광덕 2리 1183-13	1.00	11,147	
	갈금천	11-12-123	광덕 2리 산32	광덕 2리 1182-11	2.00	27,653	
	광탄천	11-12-124	광덕 2리 산248	광덕 2리 50-1	4.30	48,168	
소 계		11개 소하천			33.59	825,238	
여 량 면	자개천	11-12-125	유천리 산3-2	유천리 378-2	2.60	72,334	
	중동천	11-12-126	구절 3리 산1	구절 3리 146	0.85	17,284	
	사자목천	11-12-127	구절 2리 72	구절 1리 288-1	4.10	90,085	
	고비덕천	11-12-128	구절 1리 산224	구절 1리 290-4	0.64	8,206	
	되골천	11-12-129	유천 2리 산7	유천 2리 261	2.00	22,652	
	남곡천	11-12-130	남곡리 158-2	남곡리 106	6.75	192,187	
	적목천	11-12-131	봉정리 282	봉정리 349-4	2.25	52,381	
	고양천	11-12-132	고양리 230-1	여량 1리 673-4	6.15	197,643	
	고창골천	11-12-133	고양리 59	고양리 229	3.50	73,292	
	큰골천	11-12-134	고양리 102	고양리 226-2	3.20	69,503	
	스므골천	11-12-135	고양리 489-2	고양리 398-1	1.55	29,671	
소 계		17개 소하천			43.21	872,066	
북 평 면	하남천	11-12-136	장열 2리 산55-1	장열 2리 598-6	0.73	10,738	
	한골천	11-12-137	북평 5리 산1	북평 5리 34-1	9.25	229,649	
	장열천	11-12-138	장열 1리 산97	장열 1리 283-2	1.19	10,651	
	한대골천	11-12-139	남평리 산106	남평리 587-3	1.75	29,190	
	북적골천	11-12-140	남평리 105-1	남평리 607-9	2.04	30,572	
	새미골천	11-12-141	남평리 산141	남평리 989-16	2.47	37,296	
	용소천	11-12-142	북평 5리 산1	북평 5리 산1	1.00	20,276	
	아창천	11-12-143	북평 5리 산168	북평 5리 307-1	1.00	23,144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북 평 면	백운천	11-12-144	문곡리 203	문곡리 305	2.55	39,756	
	스므골천	11-12-145	문곡리 149	문곡리 253	1.85	23,684	
	벚밭천	11-12-146	숙암리 산1	숙암리 439	3.55	76,166	
	오재미천	11-12-147	숙암리 산400	숙암리 497	0.55	12,783	
	단입천	11-12-148	숙암리 289	숙암리 359	6.33	157,614	
	우동골천	11-12-149	숙암리 산62	숙암리 271	1.00	15,229	
	장재천	11-12-150	숙암리 204	숙암리 289	2.50	49,143	
	안단입천	11-12-151	숙암리 산1	숙암리 289	3.30	64,970	
	어도원천	11-12-152	나전 1리 산91	나전 1리 429-3	2.15	41,205	
소 계		28개 소하천		96.90	1,697,304		
임계면	가목천	11-12-153	가목리 73	가목리 69	5.00	144,381	
	직원천	11-12-154	직원 2리 산8-22	직원 2리 404	4.20	118,869	
	명주목천	11-12-155	직원리 산114-1	직원 1리 71-1	3.20	113,307	
	도진천	11-12-156	임계 2리 58	봉산리 산1-1	6.40	217,609	
	금방동천	11-12-157	임계 3리 산8	임계 2리 814	7.30	301,195	
	큰골천	11-12-158	임계 4리 산604	임계 3리 48-78	8.20	163,969	
	용구장천	11-12-159	송계리 579	송계 8리 751	1.70	20,560	
	장찬골천	11-12-160	송계 5리 26	봉산 2리 310-1	5.40	165,824	
	뒷골천	11-12-161	낙천 1리 산63	낙천 1리 153	2.50	28,424	
	소두천	11-12-162	낙천 2리 660	낙천 2리 산153-1	2.90	17,208	
	오곡천	11-12-163	낙천 1리 603	낙천 3리 557-1	1.60	19,081	
	월탄천	11-12-164	용산 1리 산18	용산 1리 202-2	1.10	11,393	
	햇골천	11-12-165	용산 2리 산160-1	용산 2리 산204-2	2.20	49,737	
	석산천	11-12-166	골지리 산140	골지리 산174-2	1.20	40,245	
	용동천	11-12-167	용산 2리 산276	용산 2리 531-5	0.90	13,988	
	석둔천	11-12-168	골지 1리 산180	골지 1리 산176-1	1.00	35,169	
	월루천	11-12-169	반천 2리 710	반천 1리 126-3	1.50	31,154	
	술안천	11-12-170	남곡리 39	봉산 3리 산169-1	5.80	114,919	
큰너근령천	11-12-171	송계 1리 산186-6	송계 2리 919-5	1.60	23,500		
너근령천	11-12-172	송계 2리 산150-1	송계 2리 881-2	1.60	19,862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고
			시 점	종 점			
임계면	고양천	11-12-173	공양리 산171	반천 1리 601-1	11.50	303,313	
	소래천	11-12-174	덕암리 산52	덕암리 137	2.90	50,027	
	등골천	11-12-175	덕암리 산50-1	덕암리 118	2.20	34,293	
	무넬골천	11-12-176	덕암리 산50-1	덕암리 237	2.80	48,697	
	삼배일천	11-12-177	덕암리 산337	덕암리 249	1.70	38,027	
	장강천	11-12-178	덕암리 산401	덕암리 339-2	2.70	43,370	
	위밀천	11-12-179	덕암리 357-2	덕암리 374-2	1.10	10,689	
	덕암천	11-12-180	덕암리 394	덕암리 3	6.70	114,379	

정선군고시 제2009-177호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I. 건 명 :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4) 가감산특례
-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II. 건 명 :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29,863종

- 1)정의 2)용어해설 3)시가표준액 4)과표적용요령 5)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9,930종

-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시가표준액 5)적용요령 6)산출예시

다. 선 박 : 138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5)시가표준액 적용방법

라. 항 공 기 : 161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표 5)적용방법

마. 시설물 부수시설물 : 1,662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바. 입 목 : 23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방법

사.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골프·콘도)

※ 해당 물건별로 고시

2. 세부사항 :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시 제2009-178호

2010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 2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내역

구 분	무 계	시가표준액(원)	적용기간	비고
소	600KG	3,500,000	2010. 1. 1~ 6.30	
돼지	100KG	250,000	2010. 1. 1~ 6.30	

정선군공고 제2009-796호

2010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공고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1.

정 선 군 수

1. 신청기간 : 2009. 12. 21 ~ 2010. 1. 19(30일간)
2. 선발인원 : 20명(남 10명, 여 10명)
 - ※ 신입생 14명, 재학생 6명(단, 향토학사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3. 입사신청 자격 :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4. 자격제한
 -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5. 신청 구비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별첨 서식 1) - 자치행정과, 읍면비치
 - 입사원서(사진 부착 - 별첨 서식 2)
 - 건강진단서 1부.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진단 포함. 별첨 서식 3)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증명서)
 -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증명서)
6. 선발자 확정 : 2010. 02. 08(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및 신청서류 제출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185)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서식 1>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신청자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과 년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동(읍·면)
	년	중 학 교		시(군)		동(읍·면)
	년	고등학교		시(군)		동(읍·면)
친권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근무처		직 위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친권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참고자료)

□ 기숙사비 내역(2010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예상내역)

향토학사(다 산 관·예 지원)						
구 분	입사비	관리비	식 비	보증금	사생회비	합계
다산관 /예지원	25,000	345,350	540,550	-	6,000	916,900

- 상기 기숙사비 및 식비는 2009년 2학기 생활관비 기준이며, 정확한 내역은 2010년 1월중 본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예정임.
- 향토학사(다산관·예지원)는 식비가 의무식임.

정선군공고 제2009-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2. 17 ~ 2009. 12. 3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구분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	송달불능 사 유
공매 예고	유환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취득세(부동산) 외 4건	30,942,470	폐문부재

(2009.12.16현재, 단위 : 원)

4. 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9-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12. 18. ~ 2010.1. 01.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제 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독촉] 고지서 송부			
2.당사자 (매도인)	성 명	유환철 (611009-1*****)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433-2			
3.처부의 위인이 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48-2번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거래가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납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4.처부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 금일천칠백일만원(17,010,000원)			
5.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6.기타(문의처)	제 출 처	기관명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남 원 수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033-560-2263 (Fax 033-560-2307)		

2009. 12. 17.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825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정 선 군 수

-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입내역 참조”
-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0년 01월 06일 이후
-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 4. 공 고 기 간 : 2009년 12월 22일 ~ 2010년 01월 05일(15일)
-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벌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의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통지내역(압류)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보관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서울43거8509	고태봉	■서울 마포구 성산동 621번지 5호 13/2	종합자원폐차장
경기4모4801	양홍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번지 39/5 은빛마을 1102동 606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산 1번지 293호 21/6	종합자원폐차장
강원80다3048	김재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8번지 5호 11/4	종합자원폐차장
강원28마4703	심치옥	■강원 태백시 통동 산 52번지 16/4	종합자원폐차장
강원80너2689	이정민	■강원 태백시 황지동 338번지 12/3 한성광업소제2사택 24동 2호	종합자원폐차장
강원80다5197	이정민	■강원 태백시 황지동 338번지 12/3 한성광업소제2사택 24동 2호	종합자원폐차장
경북32거1785	이유활	■경북 안동시 태화동 246번지 35호 12/6	종합자원폐차장
서울4퍼4011	김종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번지 30호 2/7 희정맨션 B01호	종합자원폐차장
21머5024	김봉길(성 도자동차 상사)	■대구 동구 신서동 860번지 16호 "상품용"	종합자원폐차장
강원80머1830	엄남숙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번지 6/12 중앙아파트 2동 204호	종합자원폐차장
94더2794	박진태	■인천 남구 주안동 229번지 6호 6/3 청도2차하이텔 603호	종합자원폐차장
서울50마6875	최학성	■서울 종로구 승인동 1420번지 5/3 806호 ■경기 고양시덕양구 화전동 512번지 4호 8/2	종합자원폐차장
경기78고6788	이영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586번지 15/101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번지 12호 14/1 주공아파트 44동 302호	종합자원폐차장

정선군공고 제2009-826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정 선 군 수

-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내역 참조”
 -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0년 01월 22일 이후
 -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 4. 공 고 기 간 : 2009년 12월 22일 ~ 2010년 01월 21일(30일)
 -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벌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의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통지내역(저당)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보관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경북32더3441	중앙중고자동 차매매상사 (박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96번지 9호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279번지 1호 3/2 	동강폐차장
강원33나5957	김재탁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186번지 2호 2	종합자원폐차장
경기33나8905	양승규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4번지 33호 15/3 하영빌라 302호	종합자원폐차장
부산29두8571	김용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328번지 43호 11/2	종합자원폐차장
인천33고8397	김성덕	■인천 연수구 옥련동 3번지 3호 1/6	종합자원폐차장
경기38마6801	최기봉	■경기 부천시소사구 괴안동 204번지 3호 15/2 삼익아파트 201동 1110호	종합자원폐차장

정선군공고 제2009-828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2. 23.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전 국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 지원대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로 함(제2조)
-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음(제3조)
 -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 유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 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 위원회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 위탁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593
- 문의전화 : 033-560-2547

붙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3.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4.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지원요청
5.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
6. 기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선군공고 제2009-829호

도로정비사업시행(변경)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정비 사업 시행허가(변경)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12. 22.

정 선 군 수

사업시행자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최 영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 리도205호	노선명	고한205호(고용선)
공사의종류	도로 확 · 포장		
정 비 구 간	기점 : 고한읍 고한리, 종점 : 고한읍 고한리(L=0.494km)		
공사시행장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0-1번지의외		
착 공 예 정 일	당초 : 2008. 08. 12. 변경 : 2008. 08. 12	준공예정일	당초 : 2009. 12. 31 변경 : 2010. 07. 31

목적과 사유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중 스키장 콘도 증축에 따른 기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중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로정비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정선군공고 제2009-83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2. 22.

정 선 군 수

- 1.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시송달 대상자 : “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 3. 공고기간 : 2009. 12. 22 ~ 2010. 01. 05(15일간)
- 4. 공고내용 :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및 의견제출등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산금등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이의신청 제출처 : Fax) 033-560-2174,
 ☆ 우편: 233-87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지, 고지서,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차량번호	처리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강원27노9770	대체압류	이사감	고재연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번지 1호 5/6 아파트 4동 102호
24수6216	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5저6184	압류	수취인불명	오명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34번지 3호 15/5
24수6216	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0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95버7504	압류	이사감	이동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증곡동 150번지 203호 6/8
07버3482	압류	이사감	피현순(대덕자동차매매)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19번지 11호 14통 1반
26가1654	압류	수취인불명	(주)원플러스스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67번지 21호 서진센스파크 1층
강원28마2532	압류	우편함투여	송재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53호 8통 2반 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 311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02다9403	압류	우편함투여	권정훈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번지 7호 10/5
61구4574	압류	이사감	노수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35번지 3/ 조흥 임대아파트 102동 308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33너9720	압류	우편함투여	유상열(뉴영남자동차상사)상품용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18번지 29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92부1683	압류	이사감	정종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번지 13호 8/5 칭계천대성스카이렉스1 1704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서울48마1696	압류	수취인불명	(주)연승토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87번지 7호 3층
14우4470	압류	수취인불명	대신자동 차매매할 부산업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번지 (상품용)
충남30거8083	압류	우편함투여	주선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710번지 6/1 105호
02수9301	압류	우편함투여	곽재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번지 31/2 강 희그랜드오피스텔 309호
21허4419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1우9877	압류	수취인불명	박세활(합 동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2가 11번지 2호 1통 2 반 201호
21구4423	압류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오토누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1번지 2호 동신빌딩 5 층
강원28마2532	압류	우편함투여	송재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53호 8통 2반 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 311호
서울50머3244	압류	이사감	강희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87번지 20호 3/7
25저6184	압류	수취인불명	오명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34번지 3호 15/5
95버7504	압류	이사감	이동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0번지 203호 6/8
23허3107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95버7504	압류	이사감	이동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0번지 203호 6/8
서울50머3244	압류	이사감	강희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87번지 20호 3/7
서울39나9079	압류	수취인불명	위성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고강동 480번지 8호 하이 트맨션 301호
23허3107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3허3107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서울53두6264	압류	수취인불명	김승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53번지 6호 4/1
23허3107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39누9644	압류	수취인불명	김규정(상 품용)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77번지 6호 10통 1 반 양지원룸 105호
23허3107	대체압류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3허3107	독촉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 -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24허1530	독촉	우편함투여	이승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37번지 11호 천보숲속타운 102동 202호

24수6216	독촉	폐문부재	전은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357번지 19통 9반 교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402호
10수3852	독촉	우편함투여	박성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3번지 4호 4/1
77더4530	독촉	우편함투여	홍부용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번지 2/10 사북선명아파트 102동 105호
경기33로6135	독촉	우편함투여	김종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2번지 9/도담마을아이월드 404동 802호
29서4393	독촉	우편함투여	남진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390번지 1호 17/ 영암삼호퀵스빌APT 203동 809호
강원34나6052	독촉	이사감	이재경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15번지 5
충북76고2178	독촉	이사감	(주)세경섭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426번지 *877-4600
서울39나9079	독촉	우편함투여	위성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고강동 480번지 8호 하이트맨션 301호
서울39나9079	독촉	수취인불명	위성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고강동 480번지 8호 하이트맨션 301호
01모1618	독촉	이사감	최형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303번지 2 양양삼호임대아파트 101동 808호
경기93너2569	독촉	이사감	김채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15번지 1호 1/3 203호
42서3536	독촉	수취인불명	이민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60번지 14호 6/4
제주34허1708	독촉	우편함투여	밀승기업 (주)제주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04번지 25호 101호
52고5569	독촉	이사감	고필성(동부자동차상사)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271번지 21호 "상품용"
64조6549	독촉	우편함투여	원장수외1(원재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58번지 4호 17/1
경기33로6135	독촉	우편함투여	김종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2번지 9/도담마을아이월드 404동 802호
01모1618	독촉	이사감	최형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303번지 2 양양삼호임대아파트 101동 808호
76거1357	독촉	수취인불명	박승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12번지 3호 17/1 도두리마을동보아파트상가 지1호
경기33로6135	독촉	우편함투여	김종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2번지 9/도담마을아이월드 404동 802호
강원34나8121	독촉	이사감	추운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53번지 2호 1/1
충남31머2921	독촉	이사감	김재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213번지 4호 1/4
대전31도9131	독촉	이사감	허동석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1번지 7호 8/4 반석빌라 204호
35허4521	독촉	수취인불명	지젤픽쳐스튜디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9번지 26호 백구빌딩 지하1층
62가1414	독촉	주소불명	한남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41번지 1호 7/101호

47어3520	독촉	이사감	(주)길자동 차매대상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21우7476	독촉	우편함투여	홍순석(한 주자동차 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18번지 29호 "상품용"
경북41노3257	독촉	우편함투여	김정묵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5번지 공단1주공 15-409
경기33로6135	독촉	우편함투여	김종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2번지 9/도담 마을아이월드 404동 802호
29서4393	독촉	우편함투여	남진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390번지 1호 17/ 영암삼호퀵스빌APT 203동 809호
21우7476	독촉	우편함투여	홍순석(한 주자동차 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18번지 29호 "상품용"
39가3582	독촉	주소불명	이성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1번지 7호 2/6 1층호
54나2147	독촉	수취인불명	권만희외1 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 67번지 6호 2/
경기52머1309	독촉	이사감	(주)원광인 터내셔널	경기도 군포시 당동 134번지 14호
03누8944	독촉	수취인불명	이년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7번지 27호 37/3
29버4391	독촉	수취인불명	박성복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서둔동 97번지 117호 15 통 2반
29버4391	독촉	수취인불명	박성복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서둔동 97번지 117호 15 통 2반
16허1608	독촉	우편함투여	조은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61번지 1단지 아 파트 105동 502호
10가7294	독촉	이사감	한규영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04번지 1호 3 통 17반 해송사이버아파트 202호
10허6368	독촉	이사감	홍성석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72번지 9호
31다3295	독촉	수취인불명	임종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번지 18호 7/2
92주3976	독촉	우편함투여	안영국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5번지 10호 9/5 극동아 파트 101동 1009호
06노4145	독촉	이사감	조병국(조 은상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395번지 2호
46보7947	독촉	수취인불명	제이씨엔 에스(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번지 폴리타운 211호
64라8948	독촉	수취인불명	장인영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85번지 1호 1/3
50보9305	독촉	우편함투여	김금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06번지 19/8 은행아파트 102동 902호
38러4244	독촉	수취인불명	이승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507번지 6호 17/
51나5938	독촉	이사감	김정희	강원도 강릉시 교동 290번지 15호 12/2
10더6176	독촉	우편함투여	정의석외1 인(정현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3번지 1호 10/2 401호

89다2542	독촉	수취인불명	명부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3번지 13/
경기75나7955	독촉	수취인불명	이재삼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702번지 1호 무궁화 (아)A-110
29마9264	독촉	우편함투여	박종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096번지 4호 2/1
28도3909	독촉	이사감	(유)오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195번지 3호
30마1413	독촉	우편함투여	이덕수(상품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8번지 4호 장안모터프라자 804호(상품용)
31다3295	독촉	수취인불명	임종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번지 18호 7/2
서울47라9873	독촉	수취인불명	김민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422호 15/8
32두7563	독촉	주소불명	김흥정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번지 33호 7/1
03누8944	독촉	수취인불명	이년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7번지 27호 37/3
24다9890	독촉	이사감	변영희외1인(임춘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9번지 29/5 개봉동 아이파크 103동 1703호
서울41더4588	독촉	우편함투여	주-오성보 안가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7번지 8호 리젠트 오피스텔716
51나5938	독촉	이사감	김정희	강원도 강릉시 교동 290번지 15호 12/2
03누8944	독촉	수취인불명	이년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7번지 27호 37/3
10라7977	독촉	이사감	이덕영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831번지 9/
31다3295	독촉	수취인불명	임종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번지 18호 7/2
38허5977	독촉	주소불명	김윤배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57번지 2통 7반
07소1603	독촉	이사감	박진영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1번지 8호 1/4
강원28고2309	독촉	우편함투여	정미경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603번지 1호 7/2 대림주택 101호
04저6348	독촉	우편함투여	홍순석(한주자동차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18번지 29호 "상품용"
10더6176	독촉	우편함투여	정의석외1인(정현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3번지 1호 10/2 401호
10라7977	독촉	이사감	이덕영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831번지 9/
충남30마3907	독촉	이사감	상도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05번지 1호
17서8203	고지	장기간방치	박수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번지 1호 16/3 화명동대림타운 204동 504호
경기89마3759	고지	수취인불명	화인테크(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4번지 18호
94거1106	고지	우편함투여	김성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920번지 26/9 초원그린타운 114동 703호

경기93고7013	고지	수취인불명	이재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3번지 3호
대전31도9131	고지	이사감	허동석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1번지 7호 8/4 반석빌라 204호
09조1927	고지	수취인불명	김형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번지 23호 12/1
경기31가2481	고지	우편함투여	윤귀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6번지 1호 15/3 석천빌라 B동 B01호
강원33나3330	고지	수취인불명	전명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77번지 1호 1/1 1호
서울39라2214	고지	이사감	박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5번지 11호 6/4
52누1750	고지	우편함투여	김영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0번지 1호 11/17 쌍용아진그린타운 410동 1102호
55서5766	고지	주소불명	정한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산 148번지 1/1
서울51너6021	고지	이사감	주-일일신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8번지 9호 ☎ 3473-0637
02부8270	고지	수취인불명	윤진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26번지 33호 (상품용)
충남30마3907	고지	이사감	상도산업 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05번지 1호
03저4276	고지	우편함투여	조영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87번지 8호 44/4 302호
03부4413	고지	이사감	주식회사 에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롯데
대구28노8832	미부과	수취인불명	김도완외1(김덕원)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313번지 11/1
75부7380	미부과	이사감	오석전기(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09번지 21호 지하1층
89나6714	미부과	수취인불명	서기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03번지 1/
03부4413	미부과	이사감	주식회사 에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롯데
53다3158	미부과	장기간방치	배창연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659번지 3/2
56소2275	미부과	우편함투여	김정옥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78번지 14/6 상주냉림주공APT 205동 601호

정선군공고 제2009-833호

- 2010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모집공고

2010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추진에 따른 참여
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포함)선발 예정 인원 : 61명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

2. 신청 및 선발

- ①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처별로 비치
- ②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및 연금수급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
- ③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 ④ 접수기간 : 2009년 12월 28일 ~ 2010년 01월06일까지
※ 토,일요일 등 휴일 제외
- 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⑥ 선발자 확정 발표 : 2010년 01월 15일(유무선 개인별 통보)
※ 선발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및 시에서 별도 정한 선발기준에 따름

3. 신청자격

- ① 신청일 현재 만18세 - 65세 이하인 자(남·여)
- ②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
- ③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④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6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도 사업수행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 부여 가능

4.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①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②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10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010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③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④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⑤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상인 자나 그 배우자

5. 사업추진 내용

- ①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1월말(예산범위내)
 -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② 사업장소 : 정선군 일원
- ③ 사업내용
 -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 산림내에서 숲아베기(간벌),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 및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기타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공공성 산림사업 실행

6. 임금 등 근로조건

- ① 일반인부 : 1일/40,000원
- ② 기술인부 : 1일/45,000원(인부임 40,000원+기술수당 5,000원)
 - 기술인부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관련자격증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소지자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월 ~ 금요일(또는 토요일)개근 시 주/1일 유급휴일 부여
- ④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부여
- ⑤ 1일 기준 부대경비 5,000원 지급(교통비 2,000원, 간식비 3,000원)
 - ※ 근무일에 한함
- ⑥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조치되며, 보

협료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⑦ 임업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숙박교육으로 교육기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7. 기타사항

- ①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③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공공산림가꾸기)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전화: 033-560-2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업 신청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div>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휴학, 졸업), 전공 :							
	산림 관련 자격 면허	1.				임업 관련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2.					1.		주	
		3.					2.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 업, 공무원, 학생, 농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우()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숯가꾸기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정선군공고 제2009-836호

- 『정선 아리랑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
특구계획(안) 추가변경 공고

정선군 공고 제2009-759(2009.11.24.)호의 공고문 관련, 당초 계획(안)의 추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I. 변경사항

□ 특구의 면적 : 특화사업 변경 및 사업대상 면적 축소

- 당 초 : 128,026천m²
- 변 경 : 975,075m²

□ 규제 특례사항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추가

- 당 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주세법」에 관한 특례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변 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주세법」에 관한 특례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추가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에 따라 생산된 상품의 표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특화사업 : 특례법과 연관성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유사사업의 통합 및 재분류

- 당 초
 - 정선 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
 - 정선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 정선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
- 정선 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 정선 아리랑 브랜드 강화 사업
 - 정선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 정선 아리랑제 명품 글로벌화
- 정선 아리랑 특화상품 개발 사업
 - 정선 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
 - 정선 아리랑 뗏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선 아리랑 막걸리 클러스터 조성
 -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 정선 아리랑 콘텐츠 발굴 사업
 - 정선 아리랑 장르 개발 및 공공·생활음향 제작 등

○ 변 경

- 정선 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
 - 정선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과 정선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 통합)
- 정선 아리랑 상품화 사업
 - 정선 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
 -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 정선 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 정선 아리랑 소프트웨어 사업
 - 정선 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정선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와 정선아리랑제 글로벌화 통합)
 - 정선 아리랑 관련 콘텐츠활용 사업
- 특례법과 관련 없고 중복되는 정선 아리랑 뗏목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선 아리랑 막걸리 클러스터 조성 제외

□ 재원조달 방법 : 특화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당 초

- 총 사업비 : 477억원 (국비 130억원, 지방비 347억원)

○ 변 경

- 총 사업비 : 453억원 (국비 118억원, 지방비 335억원)

II. 추가·변경 특구계획(안)

1. 특구의 명칭 : 정선 아리랑 특구

2. 특구의 위치 : 정선군(9개읍·면 일원)

3. 특구의 면적 : 975,075㎡

4. 특구지정 필요성

- 가.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어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1971년 12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띄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임.
- 나. 정선군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대표축제인 정선 아리랑제를 197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총 33회 개최하였으며, 정선 5일장 운영, 아라리촌 조성,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창단, 정선아리랑 창극공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아리랑학교 운영 등 정선 아리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음.
- 다. 이를 기반으로 정선 아리랑 특구가 지정된다면 아리랑의 시원지이자 매력있는 문화거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라. 또한, 추진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특구라는 큰 그릇에 담고 보여줌으로써 사업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과 정선 아리랑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폭넓은 인지도와 관심을 고조시킬 것임.

5. 특화사업

가. 정선 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

- 정선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나. 정선 아리랑 상품화 사업

- 정선 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
-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 정선 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다. 정선 아리랑 소프트웨어 사업

- 정선 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 정선 아리랑 관련 콘텐츠활용 사업

6. 특화사업자 : 정선군수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가.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을 위한 국유림 임도설치 및 대부허가,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특례적용
 - ⇒ 특례법 제2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특례법 제27조의 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나. 아리랑 막걸리 주조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농민주 제조면허 허가에 따른 특례적용
 - ⇒ 특례법 제36조의 3 - 「주세법」에 관한 특례
- 다.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 우선심사 특례적용
 - ⇒ 특례법 36조의 5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라.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적용
 - ⇒ 특례법 46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8. 재원조달 방법

- 총 사업비 : 453억원
 - 국비 118억원, 지방비 335억원
 - ※ 본 사업비는 사업규모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9. 부동산 가격의 안정방안

- 특구 지정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시 시행

10. 특화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 2020년

11.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방법 : 공고문 참조
 - 세부계획(안)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
- 의견제출
 - 우 편 :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 560-2131)
 - Fax : (033)560-2592

1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9. 12. 30 ~ 2010. 01. 12.

정선군공고 제2009-837호

2010년도 학교숲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2010년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따른 학교숲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1. 모집예정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10년 1월 ~ 10월(10개월)

3. 노 임 : 46,000원

- 인건비 : 41,000원/1인1일 (본인부담 보험료 포함)

- 간식비 : 3,000원

- 교통비 : 2,000원

4. 보험가입 : 5대보험(산재,고용보험,국민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가입

5. 업무내용

o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사후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종선정, 배치등 식재계획수립 컨설팅

-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요령 자문

- 학교숲 조성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

o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 학교구성원,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o 학교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o 학교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o 기타 시장이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모집방법 : 서류전형

7. 대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및 선발 우선 순위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해당자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학교 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숲해설 경험 등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병의원 또는 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
(최종합격자에 한함)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취소

2) 선발우선순위[(붙임 1- 선발기준) 참조]

- ① 학교숲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관련업무 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순)
- ②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자
- ③ 상기 ①,②항 충족 순으로 선발 (단, 동점자 발생시 청년실업자(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우선 선발)

나. 구비서류

- 학교숲코디네이터 신청서 1부 [(붙임 2) 참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직등록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
- 자격증 및 관련분야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8.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2. 28 ~ 2010. 01. 05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다.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본인 직접제출

9. 합격자발표 : 2010. 1. 8(금) (합격자 개별 구두통보)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학교숲코디네이터의 참여기간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당사자의 책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560-2427)으로 문의바람

정선군공고 제2009-8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2. 24.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 12. 28 ~ 2010. 01. 11(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광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취득세(부동산)	1,042,220	부동산	수 취 인 폐문부재
유환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취득세(부동산) 외4건	30,946,220	부동산	수취인미거 주
이창훈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취득세(부동산) 외 1건	1,844,200	부동산	폐문부재
고종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주민세(개인균등) 외 8건	954,880	부동산	폐문부재
케이이엔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취득세(기타)	6,060,220	부동산	이사감

. 끝.